

의안번호	2210813
의 퇴 인	윤준병의원
회 답 일	2025.7.25.
추계번호	25D3183
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1조의2제1항 (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모의총포 제조의 특례) 신설	「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」 제2조 제7호에 따른 관계기관 ¹⁾ 이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진 테러이용수단의 위력이나 위험성을 조사·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의총포를 제조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1조의2제1항 (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모의총포 제조의 특례) 신설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모의총포 제조의 특례(안 제11조의2제1항 신설)

- 개정안은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진 테러이용수단의 위력 등을 조사·분석하기 위하여 모의총포를 제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 예상
 - 경찰청에 따르면, 현행법에는 모의총포 제조 관련 근거가 없어 이를 제조하여 위험성을 조사·분석하는 관계기관은 없음
 - 따라서 개정안으로 인하여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등에서 모의총포를 제조할 수 있게 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
1) "관계기관"이란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직영기업,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함

- 다만, 대테러 관계기관별로 모의총포 제조 필요성, 테러활동에 사용되는 모의총포의 종류 및 범위, 모의총포 종류별 제조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참고로, 모의총포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모의총포 여부 검사(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위탁하여 수행 중)이며 검사수수료 수입이 있음
 - 민간에서 취미활동 등으로 모의총포를 해외에서 구매, 반입하는 경우, 경찰청의 위탁을 받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실시하는 모의총포 검사를 통과하여야 하며 2025년 기준 검사비는 55,000원(개인, 비영업), 350,000원(영업)임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assembly.go.kr